

# 「FRONT1 펀드(3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FRONT1 펀드(3차)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 액	○ 총 120억원 이내 - 성장사다리펀드(100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20억원)
선 정 운 용 사 수	○ 1개사
출 자 대 상 투 자 기 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 전 사전 협의 필요
운 용 사 신 청 자 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사전협의 요망)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 운용사에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운 용 사 선 정 방 법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성장금융 : www.kgrowth.or.kr
접 수 일 시	○ 2022년 10월 11일(화) 16:00까지
접 수 방 법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8.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 ○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2.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대상의 적용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아래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의무투자비율(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금액)

- ① FRONT1/D.CAMP 연관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② D.DAY\*\* 출전기업에 50억원 이상 투자

\* FRONT1/D.CAMP 연관기업 : FRONT1/D.CAMP 입주(졸업 포함) 및 프로그램 참여기업 또는 은행권청년 창업재단 투자기업 등으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

\*\* D.DAY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주관 스타트업 데모데이

※ 펀드에서 기투자한 기업이 ①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 투자실적을 주목적 투자(①)로 인정

※ ①,② 중복인정 가능 / ②의 경우,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주목적 투자 대상 여부 판단

\*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변경·추가를 요청할 경우 협의 가능

##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최 소 결 성 금 액	○ 150억원										
출 자 비 율	○ 최소결성금액의 80.0% 이내										
운 용 사 출 자 비 율	○ 약정총액의 1.0% 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운용사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존 속 기 간	○ 펀드 결성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 이내										
투 자 기 간	○ 펀드 결성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										
납 입 방 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 용 보 수	○ 관리보수 : 펀드 최종 결성규모별 차등 관리보수율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펀드 결성규모</th> <th>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 <td>2.4% 이내</td> </tr> <tr> <td>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td> <td>2.2% 이내</td> </tr> <tr> <td>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 <td>2.0% 이내</td> </tr> <tr> <td>500억원 초과</td> <td>1.5% 이내</td> </tr> </tbody> </table> * 결성일~2년 : 약정총액 기준 / 2년 이후~존속기한 : 투자잔액 기준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내에서 협의 가능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최소 5% 이상) 초과이익의 20% 이내 ※ 상기 보수 체계를 감안,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연계하여 성과 중심의 보수구조 제안 가능(사전 협의 필요)	펀드 결성규모	보수율	200억원 이하	2.4%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2%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이내	500억원 초과	1.5% 이내
펀드 결성규모	보수율										
200억원 이하	2.4%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2%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이내										
500억원 초과	1.5% 이내										

항 목	세부내용											
운 용 사 인 센 티 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FRONT1/D.CAMP 연관기업 투자실적 인센티브로서 성장사다리펀드 및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앞으로 배분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음</li> <li>- FRONT1/D.CAMP 연관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초과달성비율 = [(해당 분야 투자금액 합계/약정총액) - 60%]</li> </ul> <table border="1" data-bbox="405 490 1391 59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초과달성비율</td> <td>10%p 이상</td> <td>20%p 이상</td> <td>30%p 이상</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인센티브 지급 비율</td> <td>2% 이상</td> <td>3% 이상</td> <td>5%</td> </tr> </table>				초과달성비율	10%p 이상	20%p 이상	30%p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2% 이상	3% 이상	5%
초과달성비율	10%p 이상	20%p 이상	30%p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2% 이상	3% 이상	5%									
핵 심 운 용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이상 참여</li> <li>○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li> <li>-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li> </ul> </li> <li>※ 투자관련 경력구분 세부 내역은 제안서 제출 양식(엑셀) 참조</li> <li>○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 운용인력 겸임 제한</li> <li>○ 핵심운용인력은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고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펀드의 평균 출자약정액* 합산금액은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해당 펀드에 참여한 핵심운용인력 수로 나눈 평균 출자약정액</li> <li>※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li> <li>○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li> </ul>											
중 점 심 사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의 정책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FRONT1 및 D.CAMP)와의 사업 연계 방안 및 펀드 운용전략의 심사평가 반영</li> </ul>											
출자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li> </ul> </li> <li>○ 정책펀드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li> <li>○ 해외출자자(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 및 타 집합투자기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li> </ul>											
수 탁 회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li> <li>* 최종 펀드 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li> <li>○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항 목	세부내용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li> </ul>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li> <li>○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li> <li>○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li> <li>○ 한국성장금융의 내규, 규약(정관)을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편입가능 자산 유형)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규약(정관)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li> </ul> </li> <li>○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주목적투자분야 및 비율, 보수 구조 등)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펀드 조성목적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li> <li>○ 최다출자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을 우대적용(예 : 관리보수 인하) 가능</li> <li>- 단, 주목적 투자분야, 비율 등 펀드 조성목적에 훼손하는 조정 불가</li> </ul> </li> <li>○ 해외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의 해외투자 가능 비율은 투자금액의 [20%] 이하로 제한하며, 해외투자는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li> </ul> </li> <li>○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li> </ul>

##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제재 사항 및 기타

###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2.6.30.(목)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제안(구술)심사 → 최종선정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2. 10. 11.(화)	제안서 접수	16:00 까지
'22. 11월 중	최종 선정	개별 통지
'23. 4월 중	펀드 결성 완료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 지원방법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0부)를 제출  
- 분량 :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 출자 설명회(Online)

-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출자 설명회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프론트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4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프론트원팀 (02-2090-9123)  
E-mail : sypark@kgrowth.or.kr

2022년 9월 13일

은 행 권 청 년 창 업 재 단  
한 국 성 장 금 용 투 자 운 용

※ 공고일, 접수일 등 일정은 외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